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 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배경훈 (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사업법 개정(법률 제21652호, 2026.5.19. 공포, 2026.11.20. 시행)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 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(안 제16조)

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,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

나.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(안 제20조)

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

다. 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(안 제24조)

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6. 10. 3. ~ 11. 2.)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보유주식 수의 통지)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보유 주식 수나
주식 보유 목적의 변동을 통지하려는 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
일 이내에 그 변동 내역(주식 보유 목적의 변동을 통지하려는 경우에
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, 팩스 또는 전자 우편의 방법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18조제
1항제4호 전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
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
된 자는 법 제18조제1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신청서
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
2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
3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

4. 임원 겸임계획서(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5. 최대주주가 된 이후의 사업계획서(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제20조(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) ① ~ ③ (생략) ④ <u>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</u>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(최대주주)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7.(생략)	<u>제16조(보유주식 수의 통지) ①</u> <u>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보유 주식 수나 주식 보유 목적의 변동</u> <u>을 통지하려는 자는 그 변동이</u> <u>있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</u> <u>동 내역(주식 보유 목적의 변동</u> <u>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</u> <u>유를 포함한다)을 기간통신사업</u> <u>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,</u> <u>팩스 또는 전자 우편의 방법으</u> <u>로 한다.</u> 제20조(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⑤ ~ ⑫ (생 략)

제24조(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)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

⑤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법 제18조제1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
2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
3. 최대주주가 된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
4. 임원 겸임계획서(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5. 최대주주가 된 이후의 사업계획서(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) ①-----

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3. <u>등록증(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4. ~ 6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3. ~ 5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	
연 락 처	(044) 202 - 6625